



# 벤처투자조합 등록 매뉴얼

2024. 01

# 일 러 두 기

본 매뉴얼은 벤처투자조합 등록 시 제출해야 할 공통 제출서류와 요건별 제출서류에 대한 참고 예시 및 유의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, 보다 원활한 등록 절차 완료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.

참고 예시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식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며, 양식은 홈페이지 내 [업무지원] - [조합 등록/변경 신청] - [필요서류]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더불어,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조합 등록 시 필요한 개인 유한책임조합원과 조합 운용인력의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· 제공 동의서를 수령해 보관하여야 하며, 생년월일이 아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(예: 인감증명서)는 제출서류가 아니오니 서류 첨부 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또한 관련 법령 개정 혹은 법령에 대한 해석 변경 등이 있을 시에 본 매뉴얼의 내용은 추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.

등록 매뉴얼 관련하여 개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메일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.

# 목 차

1. 공문	-----	P.1
2. 등록신청서	-----	P.2
3. 조합원명부	-----	P.3
4. 조합분류기준표	-----	P.4
5. 결성총회의사록 및 의결서	-----	P.5
6. 출자금 납입확인서	-----	P.5
7. 자산보관 및 관리 위탁계약서	-----	P.5
8. 고유번호증	-----	P.5
9. 요건별 제출서류	-----	P.6

# 1. 공문(예시)

## GP명

(06595)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한국벤처투자빌딩 2층 / 담당자 / TEL : 02-3017-0000

문서번호 : 20XX.00.00  
수신 : 중소벤처기업부장관<sup>1)</sup>  
참조 :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 
제목 : '조합명' 등록 신청의 건

1.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0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4조제2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본 조합의 등록을 신청합니다.

2. 당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한책임조합원<sup>2)</sup>과 조합운용인력의 '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· 제공 동의서'<sup>3)</sup>를 수령하여 당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.

※필수 포함 내용

- 첨부 : 1) 등록신청서  
2) 규약  
3) 결성총회의사록 및 의결서  
4) 조합원명부  
5) 출자금 납입확인서  
6) 자산보관 및 관리 위탁계약서  
7) 고유번호증  
8) 조합분류기준표

## 조합명

업무집행조합원 GP명 대표이사 000(인)

- 1)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
2) '개인' 유한책임조합원에 한함  
3)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등록신청 시 미제출  
+ 규약상에 대표펀드매니저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, 공문상에 대표펀드매니저 1인 지정하여 기재  
ex) 대표펀드매니저 : 000

## 2. 등록신청서 \*협회 홈페이지 양식 참고

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23. 12. 21.>

# 벤처투자조합 [ ] 등록 [ ] 변경등록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14일
신청 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의2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		
신청인	조합명 고유번호증상의 조합명과 통일(띄어쓰기 포함)	납세고유번호	
	업무집행조합원	유한책임조합원수 *	
	출자금 총액 결성시점의 약정총액 기재	존속기간	날짜형식 기재 불가 0년 ex)2024.1.2~2029.1.1
	주소 고유번호증상의 조합 소재지 기재 ※조합의 소재지는 본점 또는 지점 중 택1(단, 지점이 VICS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점 선택 가능) (전화번호: )		
변경 사항			

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1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\* 유한책임조합원수 기재 방법 (참고 : 시행령 제34조제3호)

- ① 집합투자기구/벤처투자조합(5인, 출자비율 10% 이상) + 특정금전신탁(10인) = '15인' (5+10)
- ② 집합투자기구/벤처투자조합(5인, 출자비율 10% 미만) + 특정금전신탁(10인) = '11인' (1+10)
- ③ 개인 및 법인(45인), 전문투자자(5인)이 LP로 참여하여 49인을 초과하는 경우 :  
'45인(전문투자자 5인 제외)'
- ④ 벤처투자모태조합(한국모태펀드),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은 유한책임조합원수 산정 시 제외

### 3. 조합원명부 \*협회 홈페이지 양식 참고

## 조 합 원 명 부(예시)

(단위 : 좌, 원)

번호	조합원명 <sup>1)</sup> *필수포함	사업자등록번호 (생년월일) *필수포함	국적	설립출자금액 *필수포함	납입좌수 *필수포함	약정총액 *필수포함	약정좌수 *필수포함	출자비율
1	OO 일반 사모투자신탁 (집합투자기구, 5인) (집합투자업자:OO자산운용)	000-00-00000 <sup>2)</sup>		400,000,000	400	800,000,000	800	40.0%
2	OOO 일반 사모투자신탁 (집합투자기구) (집합투자업자:OO자산운용)	000-00-00000		90,000,000	90	180,000,000	180	9.0%
3	OO증권 (특정금전신탁, 15인)	000-00-00000		360,000,000	360	720,000,000	720	36.0%
4	OOO증권(고유)	000-00-00000		50,000,000	50	100,000,000	100	5.0%
5	OO신기술조합 (신기술사업투자조합, 2인)	000-00-00000		50,000,000	50	100,000,000	100	5.0%
6	OOO	000000 <sup>3)</sup>	미국 <sup>4)</sup>	50,000,000	50	100,000,000	100	5.0%
합계				1,000,000,000	1,000	2,000,000,000	2,000	100.0%

0000년 00월 00일

조합명 \*필수포함

업무집행조합원 GP명 대표이사 000(인)

- 1) 집합투자기구, 특정금전신탁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벤처투자조합이 LP로 출자한 경우, 해당 조합원의 출자성격 및 출자자수 명시(집합투자기구/벤처투자조합은 출자비율이 10% 이상일 경우에만 출자자수 기재)
- 2) 집합투자기구일 경우, 신탁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
- 3) 개인이 출자한 경우,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 기재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앞자리 기재)
- 4)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가 출자한 경우, 국적 기재

## 4. 조합분류기준표 \*협회 홈페이지 양식 참고

### < 조합분류표 >

조합명 :

※ 주목적 순위를 □안에 숫자로 기재(최대 3순위까지)

대분류	세부항목			
일반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3 AI·빅데이터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2 AR·VR	<input type="checkbox"/> ICT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술·특허
	<input type="checkbox"/> 로봇·자동차	<input type="checkbox"/> 문화	<input type="checkbox"/> 바이오·헬스케어	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적기업
	<input type="checkbox"/> 소재·부품·장비	<input type="checkbox"/> 스케일업	<input type="checkbox"/> 스포츠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성장
	<input type="checkbox"/> 에너지	<input type="checkbox"/> 여성	<input type="checkbox"/> 유니콘	<input type="checkbox"/> 일자리
	<input type="checkbox"/> 재창업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역	<input type="checkbox"/> 창업초기	<input type="checkbox"/> 청년
	<input type="checkbox"/> 해양수산	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	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	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
<input type="checkbox"/> 특수산업	산업명 :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1 특정기업	기업명 : (주) 000 1)			
특수목적	<input type="checkbox"/> M&A	<input type="checkbox"/> 세컨더리	<input type="checkbox"/> 지분유동화	

- 1) 특정기업에 투자하는 경우, 중소기업확인서+사업자등록증(업력 7년 이내), 벤처기업확인서, 이노비즈·메인비즈 확인서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 
(단, GP가 창업기획자인 경우 중소기업+사업자등록증(업력 3년 이내) 제출)

## 5. 결성총회의사록 및 의결서

### 1. 결성총회의사록

- 1) 총회 개최일시 필수 기재

### 2. 의결서

- 1) 의결서(또는 서면결의서) 조합원 전원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필수
- 2)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가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출자한 경우
  - 의결서(또는 서면결의서)에 미성년자인 조합원과 법정대리인 모두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필수
  - 미성년자인 조합원과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
## 6. 출자금 납입확인서

- 1) 신탁업자의 날인서류만 가능(인터넷뱅킹으로 출력한 자료 및 통장내역은 불가)
- 2) 조합명, 조합원명, 납입일자, 납입금액 포함
- 3) VICS 출자배분정보[1421] 거래일자
  - 납입확인서상 실제 납입일로 입력
  - 2회 이상 분할하여 납입한 경우, 최초 납입일로 입력예시) 6월 12일과 6월 14일로 나누어서 납입했을 경우, 6월 12일로 거래일자 입력

## 7. 자산보관 및 관리 위탁계약서

- 1)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제출

## 8. 고유번호증

- 1) 고유번호증상의 조합명을 기준으로 제출서류상 조합명과 VICS 신청 조합명 통일(영문, 띄어쓰기 포함)
- 2) 발급 이후 3개월이내 조합 등록 완료 필수(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고유번호증은 제출 불가)



## 9. 요건별 제출서류

기타 제출서류	상 세	
위탁자 명부 <b>*협회 홈페이지 양식 참고</b>	- 집합투자기구(10% 이상 출자) 또는 특정금전신탁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민법상조합 등이 LP로 출자한 경우에 해당 * 벤처투자조합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(VICS 정보 기준으로 LP 수 반영)	
업무집행조합원(GP사) 인가/등록 증빙서류	투자매매(중개)업자 / 집합투자업자	- 투자매매(중개)업자, 집합투자업자 자본시장법상 인가증(인가공문) (집합투자업자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, 등록증(등록공문) 확인)
	신기술사업금융회사	-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증(등록공문) (벤처투자조합 최초 결성 또는 공동GP인 경우)
재무제표 (최신 날인본)	창업기획자	- 조 건 ① 부채비율(200% 이하) ② 자본금 (신규 결성 조합+운영중인 조합이 100억원 이상 시, 약정총액의 1% 이상) ③ 경영건전성(자본잠식률 50% 미만) - 근 거 : 법 제24조제3항, 법 제50조제1항, 시행령 제13조제5항 -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재무제표확인서류(날인본) 제출 - 비영리법인은 투자 사업에 대해 구분 기록한 자료로 제출
	유한(책임)회사 (LLC)	- 조 건 : 부채비율(200% 미만) - 근 거 : 관리규정 제4조제2항 -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재무제표확인서류(날인본) 제출
사원명부(날인본) 및 경력증명서	유한(책임)회사 (LLC)	- 조 건 ① 전문인력 중 1인은 유한(책임)회사의 사원일 것 ② 투자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& 3년 이상 2명 이상 또는 투자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- 근 거 : 관리규정 제4조제2항, 시행령 제33조제2항 - 경력증명서 : 투자경력 확인가능한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또는 벤처캐피탈 근무경력 확인서 제출
인정투자대상 (또는 주목적투자) 증빙서류	프로젝트 펀드	- 법상 투자 의무 준수 확인 - <b>벤처사, 신기술사, LLC가 GP인 경우</b> : 중소기업확인서+사업자등록증(업력 7년이내), 벤처기업확인서, 이노비즈·메인비즈확인서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<b>창업기획자가 GP인 경우</b> : 중소기업확인서+사업자등록증(업력 3년이내) 제출